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영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31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2.

발의자 : 김영진 · 안호영 · 염태영
권칠승 · 안태준 · 윤후덕
소병훈 · 유동수 · 김한규
송기현 · 서삼석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법인세법」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글로벌 중앙은행 간 협력을 위한 국제금융기구로서 중앙은행 · 국제기구 등이 예치한 자금을 주요국 자산에 투자 중인 국제결제은행(BIS)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과세 대상인 국채 · 통화안정증권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투자 중이므로 국제결제은행의 원화자산 투자 확대를 위하여 국내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국제결제은행이 받는 국내원천소득 중 예금의 이자,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차익, 파생상품의 거래이익 및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제4항 신설)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국제결제은행이 받는 국내원천소득 중 예금의 이자,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매차익, 과생상품의 거래이익 및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) ① ~ ③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21조(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국제결제은행이 받는 국내원천소득 중 예금의 이자,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차익, 과생상품의 거래이익 및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한다.</u>